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8,902,732	11,367,082
일반회계	360,344,830	10,810,345
특별회계	18,557,902	556,737
기타특별회계	18,557,902	556,737
상수도사업	2,630,060	78,902
하수도사업	1,915,572	57,467
수질개선	6,408,430	192,25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56,700	16,701
의료급여기금	595,530	17,866
소득특화사업	3,727,000	111,810
농공단지조성사업	2,298,800	68,964
공영개발사업	235,810	7,074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90,000	5,7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,718,85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